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사항 요약

2013. 6.11.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고, 7월 11일 제5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 15일자로**
의장이 공포한 「의회 회의규칙」 개정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임.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국회법 벤치마킹	제 도 개 선	관행을 명문화 / 자구수정
제22조의2(입법예고)	제28조(변안) → 국회법 제91조	제47조의2(투표지의 보관 및 공개)	제14조(개회)
제55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 제14조(개회) → 국회법 제74조제2항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18조(의사일정의 변경)
제58조(위원회의 심사)	※ 제22조의2(입법예고) → 국회법 제82조의2	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9조(안전심의)
제58조의2(위원회 회의의 공개)		제73조의2(시정 질문)	제37조(발언횟수의 제한)
제73조(시장·교육감 등의 출석 요구)		제73조의3(답변 및 추진상황 보고 등)	제43조(표결의 선포)
제85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74조(시장·교육감에 대한 서면질문)	제45조(의사변경의 금지)
			제50조(회의록의 작성)
			제61조(위원회의 의사·의결 정족수)
			제66조(위원회 회의록)
			제67조의2(준용규정)
			제86조(방청의 제한)
			제87조의2(준용규정)

2.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① 의원입법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규정(제22조의2)

- 우리시의회는 2008. 4. 30부터 입법예고 제도를 도입·시행
- 회의규칙 제22조의3(의안의 상정시기)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경과된 후에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에서도 의원발의 법률안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있어, 예고기간을 10일로 정함

· 지방자치법 제66의2(2011. 7. 14.신설) : 조례안은 5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내용 : 조례안은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야 함.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단순자구수정, 시민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에서 입법예고 절차 생략이나 기간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방자치법상 5일 이상은 최소 입법예고 권장기간(임의규정)
우리시의회에서는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10일 이상 입법예고(강행규정)

② 본회의 개의 중 위원회 개최 허용(제55조)

- 법 제61조 개정에 따라 위원회는 본회의 중에도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으나,
- 이 경우 의결정족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회의 개의 시간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하도록 함

③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 신설(제58조제4항)

-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는 시장·교육감이 제출한 다른 조례안의 심사를 준용하도록 함

④ 위원회 비공개회의 규정 신설(제58조의2)

- 법 제65조에서는 본회의나 의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관련 근거를 신설함

※ 위원회에서 모든 동의는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동의자 외 1인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므로 비공개회의 동의 발의는 2명 이상이 발의하도록 규정함

⑤ 회의 불출석 사유서는 늦어도 회의 1일전까지 제출(제73조)

- 위원회는 시장·교육감을 대리하여 관련 실·국장이나 공사·공단 임원 등이 출석하고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등”으로 개정하고,
- 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신속한 위원회 출석 요구를 위하여 의장을 경유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불출석(대리출석) 사유서를 늦어도 회의 1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

⑥ 장애인의 회의 방청시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 신설(제85조제5항)

-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과 단체방청인의 방청권 기재사항을 간소화하였고, 장애인의 방청을 허가한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3. 국회법 벤치마킹

○ 위원회 제안 및 단체장 제출안건 번안근거 규정(제28조)

- 의결한 안건의 수정·보완을 위한 번안은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되는 것으로
- 현행 규칙에는 위원회 제안이나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번안절차 미비 ⇨ 국회법 제91조를 준용하여 번안규정을 정비

4. 의사진행 제도개선

① 투표지의 임기 내 보관 및 비공개(제47조의2)

- 선거나 표결에 사용된 투표지는 당해 의원의 임기동안 보관하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② 회의록 이관보관 허용(제51조제2항)

- 영구보존 회의록은 의회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에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함

③ 위원회 의사일정 통지(제54조 후단)

-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장과 소속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

④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추진상황 보고(제73조의3)

- 일괄 또는 구두답변 요구에 대한 답변서는 답변 3시간 전까지 제출받아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도록 하였고,
- 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시장·교육감의 답변 중에 신청을 받아 가능한 정회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 추진상황 보고는 연 2회 정례회 회기 중에서 보고하도록 함

⑤ 보충질문 범위 확대(제73조의2)

-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만 가능하였으나, 서면질문·구두답변 방식도 보충질문을 허용

⑥ 서면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기한 규정(제74조)

-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재차 보충질문을 하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충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함

5. 관행을 명문화 및 자구수정

① 본회의 1일 1차 회의규정 신설(제14조)

- 법 제63조제2항에서는 회의 중에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정회를 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경우 유회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관련근거를 마련하였고,
- 회의는 1일 1차 회의가 원칙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회 또는 유회선포 후에도 다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둠

② 의사일정 변경범위에 특정안건 삭제도 포함(제18조)

-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로 순서변경이나 안건의 추가 또는 삭제를 할 수 있으나, 현 규칙에는 삭제 근거가 없어 변경 범위에 의사일정 삭제도 포함

③ 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직접처리 안건(제29조제4항)

- 안건은 일반적으로 위원회 예비심사 후에 본회의에 부의함이 원칙이나, 법령에 의한 일부 안건과
- 그동안 관행적으로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던 의장제의 안건 등의 범위를 회의규칙에 명확히 규정하여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안건심사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위원회 중심의 안건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장이 제의하는 안건이나 특정 위원회의 심사범위를 넘어선 안건으로써 법령과 자치법규 관련규정에 따라 전체의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선거, 인사, 행정사무조사 실시여부 등의 안건은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처리

④ 시정질문 등은 동일의제 2회 이상 발언허가(제37조)

- 시정질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 즉, 질문이 필요하므

로 발언횟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 후에 재차 보충질문을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 신상발언에 대한 재해명, 징계관련 재변명, 기타 재반론 발언 등도 2회 이상 발언 허가
- ※ 현재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 시행중인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인 필리버스터(filibuster)제도 즉, 무제한 토론을 우리시의회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의원의 발언은 시간이나 횟수를 제한하고 있음.

⑤ 이의유무방식은 표결 선포 후에도 발언허가(제43조)

- 이의가 있는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과 소수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의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 긴급 구두발언 신청은 의장이 의사정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언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이의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위한 발언이나 찬반토론 등을 허가(소수의원 배려 측면)

⑥ 전자투표는 의사변경 허용(제45조)

- (전자투표시)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장이 투표종료 선포시까지 의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⑦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기록(제50조)

- 영상물이나 녹음파일 등은 보조 기록물이고, 공식적인 기록물은 속기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함

⑧ 안전 발의한 의원도 표결권 부여(제61조)

- 의원은 누구나 표결권을 가지므로 의원발의 안전에 대한 표결권 부여는 당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소모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의규칙에 명문화함

⑨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제66조)

-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 안전 심사에 있어 관계공무원 외에도 증인,

- 감정인, 참고인, 진술인 등이 출석하고 있으며,
-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위원회가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회의록도 위원회 회의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도록 함

⑩ 본회의 회의록 준용규정 신설(제67조의2)

- 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기타사항은 준용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본회의 회의록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어 준용규정을 신설함

⑪ 위원회 방청 본회의 준용규정(제86조, 제87조의2)

- 자구수정과 법 제59조에서 사용하는 전문위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을 말함)